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주요 과제와 개선방안

전규안* · 이중현** · 이경로***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현황과 연구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제도 도입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회계법인으로부터 주로 인증을 받는 외국과는 달리 회계법인이 아닌 기타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인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증인의 용어를 통일하고, 인증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으로 인증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관련 용역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회계법인이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을 병행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인증의 성격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인증 수준에 따라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범위와 관련된 혼란을 줄이고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각 인증기준별로 인증수준을 명확히 하여 다른 인증기준을 적용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해야 하고, 정형화된 인증보고서 양식 사용을 도입하여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저가수입으로 인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보수를 공개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고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단계적 의무화가 바람직하다.

최근에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의무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이루어져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인증인, 검증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kajeon@ssu.ac.kr, 제1저자, 교신저자

**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95sunbi@daum.net, 공동저자

***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보현회계법인 대표, krlee@bnhacs.com, 공동저자

I. 서 론

최근에 지속가능성 공시(sustainability disclosure)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보고서의 명칭은 지속가능성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보고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보고서, 기업시민보고서, 통합보고서 등 다양하다.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하여 2021년 11월 IFRS재단이 설립한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로 번역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서의 명칭을 '지속가능성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로 사용한다.¹⁾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행이 의무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에 대하여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자율적으로 발행하는 기업의 상당수가 인증을 받고 있으나, 형식적인 인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인증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린워싱이나 위크워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럽에서는 2024년(2023 회계연도 대상)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고, 미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과 scope 2)에 대해서 2024년(2023 회계연도 대상)부터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인증이 빠른 시일 내에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상장되어 있거나 유럽에 자회사를 둔 우리나라 기업은 2023년부터 당장 인증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에 대한 논의가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는 2016년에 125개 기업이 발행하였고, 그 후 130~140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에 179개 기업으로 증가하였다(고정연 2022). 최근 ESG 열풍을 타고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간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기업 중 92%가 인증을 받아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비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²⁾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간이 기업 자율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활동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로 변하고, 환경(E)과 지배구조(G)가 추가되어 ESG로 진화해 온 것처럼 ESG도 향후 언젠가는 다른 개념 또는 용어로 진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SG라는 용어 대신에 '지속가능성'이라고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ESG로 표현하기로 한다.

2) "... ESG 컨설팅 업계에 만연한 '턴키' 관행으로 인해 보고서 인증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경제신문, 2021. 12. 16.). "... IOSCO는 투자자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속가능성 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인증제도가 취약할 경우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소위 '그린워싱'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내일신문 2022. 9. 23.).

이므로 인증도 자율이고, 인증인(practitioner)은 인증보수를 받지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회계법인과 감사반)과는 달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제대로 된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나 워크워싱(woke washing)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³⁾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기업의 홍보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⁴⁾ 둘째, 인증보수가 매우 적어서 제대로 된 인증을 하기 어려워 형식적인 인증에 그치고 있다.⁵⁾ 셋째, 인증기준이 다양하고, 기업마다 적용한 인증기준이 달라서 인증받은 기업의 인증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회계감사기준’에 의해 수행되므로 어떤 기업이 ‘적정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경우에는 다양한 인증기준이 존재하고, 인증결과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수준을 추정하거나 기업간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현황과 연구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주요 과제를 알아보며,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인 관련 과제와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병행 관련 과제, 인증성격, 인증범위, 인증기준, 인증보고서 양식, 인증보수, 인증의무화 등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인의 용어를 통일하고, 인증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으로 인증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관련 용역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고, 인증인의 법적 책임 문제도 정리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병행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인증의 성격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증’ 관련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인증 수준에 따라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넷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과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하여 인증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각 인증기준 별로 인증수준을 명확히 하여 다른 인증기준을

3) 그린워싱(green washing)은 실체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친환경주의’를 말하고, 워크워싱(woke washing)은 사회적 문제나 가치에 개여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 특히 S기업의 경우, 대표인사말까지 포함해서 무려 10페이지를 자사 홍보 브로셔처럼 정리했다. 이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홍보 브로셔에 가까워, 아까운 나무를 베어버리고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지속가능성에 반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IMPACT ON 2021. 1. 20.).

5) “...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돈을 조금만 받고 보고서 도장만 찍어주는 관행이 만연해 회계법인 입장에서 참여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서울경제신문, 2021. 12. 16.).

적용한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정형화된 인증보고서 양식의 사용이 필요하고, 필수적인 양식만을 제정하고, 정해진 양식 외에는 인증인이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하였다. 일곱째, 인증보수를 공개하여 매우 낮은 인증보수만을 받고 형식적인 인증만을 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여덟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고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단계적 의무화가 바람직함을 제안하였다.

최근에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의무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두되고 있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과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이루어져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Ⅲ장에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과 관련된 연구동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제Ⅳ장에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관련 주요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공헌점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현황

1. 주요 국가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현황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국제회계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FAC)은 22개국의 1,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와 인증(assurance)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2019년에 91%이고 2020년에 92%로서 유사하였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중 인증받은 기업은 2019년 51%에서 2020년 58%로 증가하였다. 인증제공자(assurance provider)는 2019년에는 회계법인과 계열사(audit or audit-affiliated firms)의 비중이 63%이었으나 2020년에는 61%로 소폭 감소하였고, 기타서비스제공자(other service provider, 컨설팅업체)로부터 인증받은 기업은 2019년 37%에서 2020년 39%로 소폭 증가하였다.⁶⁾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 제공 비율은 2019년 83%와 2020년 82%로 유사

6) Ackers(2017)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the Johannesburg Stock Exchange, JSE)에 상장된 대기업을 대상으로 8년(2007년~2014년)간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인을 조사한 결과, Big4가 매년 60%~70%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시장에서 Big4의 시장 지배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하여 Ackers(2017)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인증보수에 민감하므로 Big4 대신에 기타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

하였으며, ISAE 3000(개정)을 적용한 비율은 2019년 68%에서 2020년 72%로 증가하였다.⁷⁾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을 동일한 회계법인이 수행한 비율은 2020년에 71%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인증보고서의 공시방법은 지속가능성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의 형태로 공시하는 경우(2019년 56.5%, 2020년 50.9%)가 가장 많았으며,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의 형태로 공시하는 경우(2019년 17.8%, 2020년 19.7%)와 통합보고서(integrated report)의 형태로 공시하는 경우(2019년 16.4%, 2020년 21.0)는 유사하였다.

한편 IFAC의 조사에 우리나라도 50개 기업이 포함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 50개 중 46개 기업(92%)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여 세계 평균(91%)과 유사하였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중 93.5%(43개 기업)가 인증을 받아서 세계 평균 51%보다 월등히 높았다. 우리나라 57개 기업의 인증보고서의 인증제공자는 5%(3개 보고서)가 회계법인이고, 95%(54개 보고서)가 기타서비스제공자(other service provider)로서 회계법인의 인증비율이 세계 평균 63%보다 매우 낮았다.⁸⁾ 즉,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지만, 회계법인으로부터 주로 인증을 받는 외국과는 달리 회계법인이 아닌 기타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인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인증을 받은 기업 중 20%가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limited assurance)을 받아서 세계 평균인 83%보다 현저히 낮았다.⁹⁾ 이는 회계법인이 인증하면

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 7)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제정한 ISAE 3000(개정)(ISAE 3000(Revised),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000)은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or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으로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지속가능성보고서 등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적용 가이드선(Non-Authoritative Guidance on Applying ISAE 3000 (Revised) to Sustainability and Other Extended External Reporting (EER) Assurance Engagements)’를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22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 가이드선은 회계감사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공식기준이나 지침이 아니므로 인증업무기준에 따른 인증업무에 이 가이드선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8)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회계법인 인증비율이 낮은 것은 국내시장에서 아직 정보이용자들의 정보 신뢰성 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인증 수수료가 비교적 낮게 책정된 것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보인다(고정연 2022). 그 외에도 회계감사 실패로 인한 법적 책임을 감사인과 공인회계사가 부담하는 재무제표 감사와는 달리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실패로 인한 책임을 인증인이 사실상 부담하지 않는 점도 인증보수가 낮게 책정되는 원인이 되고, 따라서 인증에 대한 회계법인의 관심도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의 영향으로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의 수요가 증가한 것도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에 덜 참여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 9) 인증을 받은 우리나라 기업 중 20%가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을 받았고, 18%가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을 받았고, 58%가 중간수준 검증(moderate assurance)을 받았으며, 4%는 인증여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합리적 확신을 받은 기업은 모두 온실가스 보고서(greenhouse gas reports)와 관련되었다. ISAE 3000에서는 인증수준을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과 합리적 확신(reasonable

제한적 확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기타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중간 수준 검증(moderate assurance)’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인증에 사용된 인증기준으로 ISAE 3000을 적용한 기업은 18%에 불과해 세계 평균 88%보다 현저히 낮았다.¹⁰⁾ 이는 회계법인이 인증하면 ISAE 3000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회계법인의 인증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ISAE 3000을 적용한 비율도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와 인증 현황

구분	전 세계		한국 : 2019년 대상
	IFAC(2021) : 2019년 대상	IFAC(2022) : 2020년 대상	
조사대상 기업	1,400개	1,400개	50개
지속가능성 공시 비율	91%	92%	92%
인증비율	51% (EU 제외시 44%)	58%	93.5%
인증제공자	• 회계법인(58%) + 계열사(5%)=63% • 기타 제공자 : 37%	• 회계법인과 계열사 : 61% • 기타 제공자 : 39%	• 회계법인(5%)과 계열사(0%)=5% • 기타 제공자 : 95%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 제공 비율	83%	82%	20%
ISAE 3000(개정) 적용 비율	68%	72%	18%
외부감사와 ESG 인증 동시 제공 비율	N/A	71%	0% (2020년 대상)
인증보고서 공시방법	• 지속가능성보고서 : 56.5% • 연차보고서 : 17.8% • 통합보고서 : 16.4% • 무공시 : 9.3%	• 지속가능성보고서 : 50.9% • 연차보고서 : 19.7% • 통합보고서 : 21.0% • 무공시 : 8.4%	• 지속가능성보고서 : 58% • 연차보고서 : 2% • 통합보고서 : 32% • 무공시 : 8%

회계법인과 계열사(audit or audit-affiliated firms)

기타 제공자 : 기타서비스제공자(other service provider)

N/A : 자료 없음

출처 : IFAC(2021)과 IFAC(2022)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assurance)으로 분류하는 반면에 AccountAbility가 제정한 인증기준인 AA1000AS(Assurance Standard) v3(2020)에서는 중간수준 검증(moderate assurance)과 고위수준 검증(high assurance)으로 분류하므로 회계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경우가 적은 우리나라는 제한적 확신과 합리적 확신이 적게 된다.

10) ISAE 3000의 적용비율이 18%, ISAE 3410이 4%, AA1000AS가 74%, ISO 14064-3이 16%, 기타(other)가 46%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을 동일한 회계법인이 수행한 비율은 0%로서 2020년 세계 평균 71%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회계법인의 인증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제한적 확신을 제공하는 비율이 낮고, 인증기준으로 ISAE 3000을 적용하는 경우도 매우 낮으며, 회계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을 동일한 회계법인이 수행한 비율이 0%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증보고서의 공시방법은 지속가능성보고서가 58%, 통합보고서가 32%, 연차보고서가 2%로서 지속가능성보고서와 통합보고서를 통한 공시비율이 높고, 연차보고서의 형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¹⁾

한편 S&P 500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비율은 2019년 29%에서 2020년 44%로 증가하였다(Governance & Accountability Institute 2021). 이는 <표 1>에서 2019년 기준으로 EU 국가를 제외한 국가들의 인증비율 44%와 동일한 수준이다.

2.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동향

현재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유럽을 중심으로 점차 인증을 강제화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요성이 크고 비교적 측정이 쉬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인증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있다. 본 절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동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비재무보고지침)에 의한 공시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왔다. NFRD는 임직원 500인 초과 기업(상장기업, 은행, 보험회사, 정부가 공익단체로 지정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무화되었으나, 인증은 기업의 자율에 맡겼다. 2021년 4월 21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NFRD의 개정안인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를 발표하였다. 개정안은 NFRD를 CSRD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고 대상 기업을 확대(대기업, 상장기업, EU에서 1.5억 유로의 순매출기업 또는 EU 내 자회사가 있는 비(非)EU기업 등)하고, 인증(certification)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¹²⁾ 따라서 유럽에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기후 관련 공시 의무(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규정 초안을 2022년 3월 21일 발표하였다. 이 규정 초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Scope 1 및 Scope 2 인증의 단계적 의무화와 Scope 3 공시를 규정하고 있다. Scope 1과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와 관련하여 상장대기업(Large

11) 우리나라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사용된 공시기준 또는 프레임워크는 GRI(93%), SDG(91%), SASB(30%), TCFD(24%), UNGC(24%), 기타(other) 30%이다.

12) 현재 NFRD 적용기업은 2024년(2023회계연도)부터 CSRD를 적용하고, 현재 NFRD 적용대상이 아닌 대기업(large companies)은 2025년부터 적용하며, 상장중소기업 등은 2026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Accelerated Filer)은 2025년 제출보고서(2024 회계연도 대상)부터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Limited Assurance)을 해야 하고, 2027년 제출보고서(2026 회계연도 대상)부터 합리적 확신 수준의 인증(Reasonable Assurance)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상장소기업(Accelerated Filer)은 2026년 제출보고서(2025 회계연도 대상)부터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Limited Assurance)을 하고, 2028년 제출보고서(2027 회계연도 대상)부터 합리적 확신 수준의 인증(Reasonable Assurance)을 받도록 되어 있다.¹³⁾ 이와 같이 미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중심으로 인증이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다.

III.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연구 동향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은 가치 관련성 증가, 감사품질 향상, 정보불균형 감소, 재무제표 재작성 증가, 지속가능성 투자 효율성(sustainability investment efficiency) 증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대부분이다(Pflugrath et al. 2011 ; Brown-Liburd and Zamora 2015 ; Casey and Grenier 2015 ; Cuadrado-Ballesteros et al. 2017 ; Fuhrmann et al. 2017 ; Ballou et al. 2018 ; Clarkson et al. 2019 ; Michelon et al. 2019 ; Steinmeier and Stich 2019 ; 최현수 2020 등).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연구 중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인 선택 관련 연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 유형(회계법인과 기타서비스제공자(컨설팅업체))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서 알아본다.¹⁴⁾

13)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미국의 인증 계획은 다음과 같다.

구분	Scope 1과 Scope 2 온실가스 공시 준수 시기	제한적 확신 (Limited Assurance)	합리적 확신 (Reasonable Assurance)
상장 대기업	2023회계연도 (2024년 제출)	2024회계연도 (2025년 제출)	2026회계연도 (2027년 제출)
상장 중소기업	2024회계연도 (2025년 제출)	2025회계연도 (2026년 제출)	2027회계연도 (2028년 제출)

출처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22.3.21. “Fact Sheet,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14)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과 관련된 일반적인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Velte and Stawinoga(2017)를 참조하기 바란다.

1.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인 유형 선택 관련 연구

Perego(2009)는 10여 개 국가의 136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약한 법적인 환경(weak legal environment)에 속한 국가의 기업일수록 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Perego(2009)는 법적인 환경이 강한 국가보다는 지배구조 통제시스템이 없는 법적인 환경이 약한 국가에서 고품질의 회계법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Big4 회계법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Simnett et al.(2009)은 31개 국가 2,113개 기업-연도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평판을 제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인증받는 경향이 있으나, 인증제공자가 회계법인 여부는 관련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영향력이 큰 국가의 기업(companies operating in stakeholder-orientated countries)에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으로 회계법인을 더 많이 선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Peters and Romni(2015)는 미국의 912개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환경위원회(environmental committees)에 전문가가 포함되면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으로 회계법인을 더 선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Clarkson et al.(2019)은 40개 국가의 17,050개 기업-연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CSR 평가점수(Thomson Reuters의 ASSET4의 사회와 환경 관련 점수를 산업-연도 평균으로 조정한 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별도의 CSR 보고서를 발행하고, 인증을 받으며, 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인증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u et al.(2022)은 독립성(independence,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서비스보수로 측정) 문제로 인해 재무제표 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에 대한 전문성(expertise)과 비재무보고를 연차보고서에 재무보고와 함께 통합하는 최근의 경향이 재무제표 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을 일치시키는데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Wong and Millington(2014)은 147개의 영국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고서(corporate social disclosure, CSD) 인증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투자자는 감사절차에서의 적격성보다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회계법인(financial auditors)보다 환경전문 인증인(specialist environmental assurors)의 인증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독립성이 확보되고 전문성을 갖추면 회계법인이 더 선호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이기도 하다.

육근호(2017)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우리나라의 218개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규제산업(공공, 민간)에 속한 기업에서는 회계법인 대신에 전문기관으로부터의 검증을 선호하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2.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누구를 인증인으로 선택하는가보다는 어떤 인증인이 본래의 인증업무를 제대로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알아본다.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인은 회계법인과 기타서비스제공자(other service provider)로 나누어지므로 회계법인이 인증하는 경우와 기타서비스제공자가 인증하는 경우의 인증효과에 관한 연구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가. 회계법인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먼저 Pflugrath et al.(2011)은 3개 국가(미국, 영국, 호주)의 106명의 재무분석가를 대상으로 실험실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CSR 보고서의 신뢰성(credibility)은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받은 경우에 더 높았으며, 인증인이 회계전문가(professional accountant)인 경우가 컨설팅업체인 경우보다 CSR 보고서의 신뢰성이 높았다. 다만, 연구결과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인증인이 회계전문가인 경우에 CSR 보고서의 신뢰성이 높았으나, 영국과 호주의 재무분석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y and Grenier(2015)는 1933년~2010년까지 미국의 102,822개 기업-연도 자료(CSR 보고서를 발행한 2,629개 기업-연도, CSR 인증을 받은 230개 기업-연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CSR 인증을 덜 받는 경향이 있으며, CSR 인증은 재무분석가 예측오차(analyst forecast errors) 감소와 예측분산(analyst forecast dispersion)의 감소를 가져와 자본비용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자본비용 감소와 재무분석가의 예측오차 감소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경우에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Casey and Grenier(2015)는 이러한 분석결과가 CSR 인증을 고려하는 기업과 CSR 인증 시장을 개척하려는 회계법인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Peters and Romni(2015)는 912개의 미국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지배구조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지속가능성 관련 임원(Chief Sustainability Officer(CSO))이 존재하거나 환경위원회(environmental committees)에 전문가가 포함되면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하며, 환경위원회에 전문가가 존재하고 CSO가 전문가인 경우와 회계법인이 인증하는 경우에 증가와 양(+)의 관계를 보였다.

Cuadrado-Ballesteros et al.(2017)은 17개 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간은 정보불균형(재무분석가의 예측정확성으로 측정)을 감소시키며,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인증받은 경우에는 정보불균형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계법인이 인증을 하면 정보불균형이 더 감소하며, 인증수준이 합리적 확신이나 고위수준(reasonable or high level of assurance)인 경우가 제한적 확신이나 중간수준(limited or moderate level)인 경우에 비해 정보

불균형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국가(stakeholder-oriented countries)에서 정보불균형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llou et al.(2018)은 전 세계 41개 국가의 2,339개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인증이 CSR 보고의 질(CSR reporting quality)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CSR 보고의 질의 대용치로서 CSR 재작성(CSR restatements)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증은 CSR 보고의 질을 향상시키며, GRI 보고기준의 채택은 보고품질의 향상에 기여하지만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데 있어서는 인증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계법인이 인증하는 경우가 비(非)회계법인(non-accounting providers)이 인증하는 경우에 비해 CSR 보고서의 과거 오류를 더 잘 발견할 뿐만 아니라 미래 CSR 보고서의 오류를 더 잘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Ballou et al.(2018)은 CSR 보고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GRI 보고기준을 이용하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Clarkson et al.(2019)은 40개 국가의 17,050개 기업-연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CSR 보고서의 인증과 인증범위는 그 기업의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포함가능성을 증가시키지만 인증인의 유형(Big4 여부)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SR 인증을 받는 경우, Big4 회계법인이 인증한 경우, 이용가능한 CSR 정보가 많은 경우, CSR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에 주가와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수(2020)는 2010년~2019년 동안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인증받은 412개 기업-연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간과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모두 주가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인이 Big4 회계법인인 경우에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증받은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온실가스 인증서가 포함되는 경우에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나. 기타서비스제공자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Hummel et al.(2019)은 유럽 7개 국가의 122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깊이 있는 인증(in-depth assurance services)을 요구하고, 회계법인이 아닌 인증인이 더욱 포괄적인 인증(broader assurance statements)을 제공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Hummel et al.(2019)에서는 인증의 깊이(depth)와 폭(breadth)을 측정할 때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에 공시된 내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2>는 지금까지 설명한 (1)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인 유형 선택 관련 연구와 (2)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정리한 표이다.

〈표 2〉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인 유형 관련 선행연구

(1)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인 유형 선택 관련 연구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 유형 : 회계법인 또는 기타서비스제공자	(2)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Perego(2009) : 약한 법적인 환경에 속한 국가 • Simnett et al.(2009) : 이해관계자 영향력이 큰 국가 • Peters and Romni(2015) : 환경위원회에 전문가 포함 • Clarkson et al.(2019) : CSR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 • 육근효(2017) :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	⇒ 회계법인 선호 ⇒	• Pflugrath et al.(2011) : 실험실 연구 결과, 미국에서는 인증인이 회계전문가인 경우에 CSR 보고서의 신뢰성이 높음 • Casey and Grenier(2015) : 회계법인이 인증하면 재무분석가의 예측오차가 더 감소함 • Peters and Romni(2015) : 회계법인이 인증하면 주가와 양(+)의 관계를 보임 • Cuadrado-Ballesteros et al.(2017) : 회계법인이 인증하면 정보불균형이 더 감소 • Ballou et al.(2018) : 회계법인이 인증하면 과거 오류를 더 잘 발견하고 미래 CSR 보고서의 오류를 더 잘 방지함 • Clarkson et al.(2019) : Big4 회계법인이 인증하면 CSR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에 주가와 양(+)의 관계가 있음 • 최현수(2020) : Big4 회계법인이 인증하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Wong and Millington(2014) : 투자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육근효(2017) : 규제산업에 속한 기업	⇒ 기타서비스제공자 선호 ⇒	• Hummel et al.(2019) : 회계법인 이외의 인증인이 더 포괄적인 인증을 제공함

* 기타서비스제공자(other service provider) : 회계법인이 아닌 컨설팅업체 등

다. 인증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이 혼재된 연구

Perego(2009)는 10여 개 국가의 136개 기업을 대상으로 O'Dwyer and Owen(2005)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를 Big4 회계법인이 인증한 경우와 회계법인이 아닌 인증인이 인증한 경우로 나누어 인증의 질(assurance quality)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증의 질을 지속가능성보고서 '보고형식(reporting format)'과 '인증절차(assurance procedures)'로 측정한 경우에는 Big4 회계법인과 인증의 질 간에 양(+)의 관계가 있었으나, '제안과 의견(recommendations and opinion)'으로 측정한 인증의 질에서는 Big4 회계법인과 인증의 질 간에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chelon et al.(2019)은 미국의 2010년~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sustainability reporting assurance, SRA)을 받으면 지속가능성보고서 재작성(restatement) 가능성이 높으며, 그 관계는 방법론적 업데이트(methodological updates restatements)로 인한 재작성보다 오류(error restatements)로 인한 재작성의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은 중요하지 않은 재작성(non-material restatements)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증인 유형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컨설팅회사가 인증하는 경우에는 5가지 유형 모두 지속가능성보고서 재작성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회계법인이 인증하는 경우에는 방법론적 업데이트(methodological updates restatements)로 인한 재작성 및 중요하지 않은 재작성(non-material restatements)과는 관련이 없고 나머지 3개의 재작성에서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라.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병행 관련 연구

채무제표 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의 일치 여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먼저 Maso et al.(2020)은 55개 국가의 28,661개의 기업-연도를 이용하여 Big4 회계법인이 채무제표 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을 함께 수행한 경우가 감사인의 계속기업 불확실성 평가(auditor's assessment of going-concern risk)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았다.¹⁶⁾¹⁷⁾ 감사인이 외부감사만을 수행한 기업에 비해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

15) Michelon et al.(2019)은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이용된 지속가능성보고서 재작성 여부를 5가지 유형(five alternative measures for restatements.)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5가지 유형은 (1) 지속가능성보고서 재작성(restatement) 여부, (2) 오류로 인한 재작성(error restatement) 여부, (3) 방법론적 업데이트(methodological update restatements)로 인한 재작성 여부, (4) 중요한 재작성(material restatement) 여부, (5) 중요하지 않은 재작성(non-material restatement)이다.

16)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연구들은 여러 국가의 자료를 이용하는데, 이에 대하여 Maso et al.(2020)은 CSR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은 글로벌 현상이고,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generalizability)을 제고하고, 분석의 검정력(the power of our tests)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17) Big4 회계법인이 감사한 기업자료만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 Maso et al.(2020)은 감사인 유형(Big4 vs non-Big4)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 표명 차이를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고서 인증을 함께 수행한 기업들이 (1)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고, 유형 2(type II)의 계속기업 오류(중요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기업을 발견하지 못할 위험)를 감소시키고, (2) 환경과 소송 관련 준비금을 더 많이 기록하고, (3) 더 지속적이고 가치 관련성이 높은 이익을 보고하고, 이익감소 재무제표 재작성이 적지만, (4) 더 많은 감사보수나 총보수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팀(the CSR assurance team)으로부터 외부감사팀(the financial audit engagement team)으로 CSR 관련 지식이 전(knowledge spillovers)이 되기 때문에 외부감사팀은 해당 기업의 CSR 위험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고, 이는 그 기업의 계속기업 불확실성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동일한 기업에 대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과 재무제표 감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¹⁸⁾

Lu et al.(2022)은 35개 국가 1,524개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재무제표 감사인과 지속가능성보고서(확장된 외부보고(extended external reports, EER) 보고서) 인증인의 일치는 추가적인 감사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더 높은 재무제표 감사품질(higher financial statement audit quality)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재무제표 감사인과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의 일치 여부는 감사보수와는 관련이 없지만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과 음(-)의 관계가 있고,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의견(going-concern opinion)과 양(+)의 관계가 있으므로 더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함을 발견하였다. Lu et al.(2022)은 재무제표 감사인과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의 일치가 높은 감사품질을 가져오는 이유로 Maso et al.(2020)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팀(the CSR assurance team)으로부터 재무제표 감사팀(the financial audit engagement team)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지식이전(knowledge spillovers)을 제시하였다.

3.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관련 기타 연구

전영승(2012)은 2011년부터 2012년 6월 말 사이에 발간된 지속가능성보고서 75개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① 적용한 검증기준이 AA1000AS(2008)에 편중되고, ② 검증수준은 중간수준 혹은 제한적 검증수준에 그치고 있고, ③ 제3자 검증이 주로 전문 컨설팅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어 검증의 독립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에 의문이 들며, ④ 검증결과를 수록하는 보고서의 명칭이 ‘검증보고서’, ‘검증의견서’, ‘검증성명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⑤ 보고서에 사용된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검증기관마다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제3자 검증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형식적인 면에서는 보고서의 명칭과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이 필요

하였다.

18) 기존의 비감사서비스(세무자문, IT 관련 서비스, 경영컨설팅 등)가 재무제표 감사에 지식이전(knowledge spillovers)을 한다는 선행연구도 존재한다(Koh et al. 2013 ; Svanström 2013 ; Bell et al. 2015).

하고, 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표준화하고, ② 내용적인 면에서는 검증수준을 고위수준 혹은 합리적 검증수준으로 점차 높여가야 할 것이며, 검증기준도 AA1000AS(2008)뿐만 아니라 ISAE 3000을 적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③ 제도적인 면에서는 제3자 검증을 위한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하고 검증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시급하고, 검증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지속가능경영 전문가를 한 팀으로 검증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표 3>은 지금까지 설명한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선행연구를 요약 정리한 표이다.

〈표 3〉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선행연구

Panel A :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인 선택 관련 연구		
논문	표본	주요 결과
Perego(2009)	10여개 국가, 2005년, 136개 기업	약한 법적인 환경(weak legal environment)에 속한 국가의 기업일수록 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지속가능성 보고서 인증을 더 받음
Simnett et al.(2009)	31개 국가, 2002년~2004년, 2,113개 기업-연도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평판을 제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인증받는 경향이 있으나, 인증제공자가 회계법인 여부는 관련이 없음. 그러나 이해관계자 영향력이 큰 국가의 기업에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으로 회계법인을 더 많이 선택함.
Wong and Millington(2014)	147개의 영국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투자자는 감사절차에서의 적격성보다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회계법인(financial auditors)보다 환경전문 인증인(specialist environmental assurors)의 인증을 선호함.
Peters and Romni(2015)	미국, 2002년~2010년, 912개 기업-연도	환경위원회(environmental committees)에 전문가가 포함되면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으로 회계법인을 더 선택함
Clarkson et al.(2019)	40개 국가, 2009년~2015년, 17,050개 기업-연도	CSR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별도의 CSR 보고서를 발행하고, 인증을 받으며, 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인증범위가 넓음.
육근효(2017)	우리나라, 2010년~2014년, 218개 기업-연도	우리나라의 218개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규제산업에 속한 기업에서는 회계법인 대신에 전문기관으로부터의 검증을 선호하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회계법인을 선호함.
Lu et al.(2022)	35개 국가, 2012년~2016년, 1,524개 기업-연도	독립성 문제가 있으면 재무제표 감사와 지속가능성 보고서 인증인이 일치하지 않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에 대한 전문성과 통합보고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을 일치시키는데 영향을 미침.

〈표 3〉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선행연구 (계속)

Panel B :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 회계법인이 더 우수하다는 연구		
논문	표본	주요 결과
Pflugrath et al.(2011)	3개 국가(미국, 영국, 호주), 106명의 재무분석가를 대상으로 한 실험실연구	CSR 보고서의 신뢰성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 더 높고, 인증인이 회계전문가인 경우가 컨설팅업체인 경우보다 높음. 다만, 미국에서는 인증인이 회계전문가인 경우에 신뢰성이 높았으나, 영국과 호주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Casey and Grenier(2015)	미국, 1933년~2010년, 102,822개 기업-연도	CSR 인증은 재무분석가 예측오차와 예측분산의 감소를 가져와 자본비용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자본비용 감소와 재무분석가의 예측오차 감소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 더 높음
Peters and Romni(2015)	미국, 2002년~2010년, 912개 기업-연도	지속가능성 관련 임원(CSO)이 존재하거나 환경위원회에 전문가가 포함되면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하며, 환경위원회에 전문가가 존재하고 CSO가 전문가인 경우와 회계법인이 인증하는 경우에 추가와 양(+)의 관계를 보임
Cuadrado-Ballesteros et al.(2017)	17개 국가, 2007년~2014년, 8,156개 기업-연도 (또는 1,145개 기업-연도)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간과 인증은 정보불균형이 감소시키며, 회계법인이 인증을 하면 정보불균형이 더 감소하고, 인증수준이 합리적 확신이나 고위수준인 경우가 제한적 확신이나 중간수준인 경우에 비해 정보불균형이 더 감소함.
Ballou et al.(2018)	41개 국가, 2011년~2013년, 2,339개 기업-연도	회계법인이 인증하는 경우가 비(非)회계법인이 인증하는 경우에 비해 CSR 보고의 질(CSR 보고서의 재작성으로 측정)이 높음
Clarkson et al.(2019)	40개 국가, 2009년~2015년, 17,050개 기업-연도	CSR보고서의 인증과 인증범위는 그 기업의 DJSI 포함가능성을 증가시키지만 인증인의 유형(Big4 여부)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CSR 인증을 받는 경우, Big4 회계법인이 인증한 경우, 이용가능한 CSR 정보가 많은 경우, CSR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에 추가와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현수(2020)	우리나라, 2010년~2019년, 412개 기업-연도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간과 인증 모두 추가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으며, 인증인이 Big4 회계법인인 경우에 기업가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표 3〉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선행연구 (계속)

나. 기타서비스제공자(other service provider)가 더 우수하다는 연구		
논문	표본	주요 결과
Hummel et al.(2019)	유럽 7개 국가, 2013년, 122개 기업	지속가능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깊이 있는 인증을 요구하고, 회계법인이 아닌 인증인이 더욱 포괄적 인 인증을 제공함.
다. 인증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이 혼재된 연구		
논문	표본	주요 결과
Perego(2009)	10여개 국가, 2005년, 136개 기업	인증의 질을 지속가능성보고서 ‘보고형식’과 ‘인증 절차’로 측정한 경우에는 Big4 회계법인과 인증 의 질 간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고, ‘제안과 의 견’으로 측정한 인증의 질에서는 Big4 회계법인과 인증의 질 간에 음(-)의 관계가 존재함
Michelon et al.(2019)	미국, 2010년~2014년, 1,200개 기업-연도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을 받으면 지속가능성보고 서 재작성(restatement) 가능성이 증가. 인증인이 컨설팅회사이면 5가지 유형의 재작성과 관련이 있 고, 회계법인이면 3가지 유형의 재작성만 관련이 있음.
라.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병행 관련 연구		
논문	표본	주요 결과
Maso et al.(2020)	55개 국가, 2002년~2017년, 28,661개의 기업-연도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을 함께 수행한 경우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을 표명할 가 능성이 높고, 유형 2(type II)의 계속기업 오류를 감소시키고, 더 지속적이고 가치관련성이 높으며, 이익감소 재무제표 재작성이 적은 이익을 보고하 고, 더 많은 감사보수나 총보수를 부과하지 않음.
Lu et al.(2022)	35개 국가, 2012년~2016년, 1,524개 기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인과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인의 일 치는 추가적인 감사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더 높은 재무제표 감사품질(재량적 발생액과 계속기업 불 확실성 감사의견으로 측정)을 얻을 수 있음.

IV.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관련 주요 과제와 개선방안

현재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행이 자율이므로 인증도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이 의무화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을 의무화하게 될 것이다.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나 워크워싱(woke washing)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게 되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은 의무화될 것이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으나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가 시작되었다.¹⁹⁾ 동일한 이유로 인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행이 의무화되면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인증도 자연스럽게 의무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인증 계획이 발표되었으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는 달리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의무화는 수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또한 다른 점도 존재한다.²⁰⁾ 따라서 회계감사로부터의 경험을 살리되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특성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슈가 존재하며,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슈들이 정리되어야 한다.²¹⁾ 본 절에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과 관련된 주요 과제를 <표 4>와 같이 나누어 알아보고, 과제 해결을 위한 개선

19) 1825년에 영국에서 철도 건설 후 철도산업이 발전하였으나 철도건설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재무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감가상각비가 논란이 되는 등 철도산업은 부패의 상징이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가 출현하게 되었고, 1840년대에 PWC, Deloitte, Ernst & Young, 그리고 1870년대에 KPMG의 모태가 된 회계법인이 설립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1854년에 chartered accountants 제도를 도입하였고, 미국에서는 1887년에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가 설립되었다. 이와같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의 요구에 의해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가 시작되었다.

20) Cohen and Simnett(2015)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비교할 때 CSR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한다.

- 회계감사는 독점시장인 반면에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시장은 경쟁시장임(The existence of a competitive (in contrast to monopolistic) market)
- 검증될 주제가 다양함(The diversity of the subject matter examined)
-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에는 복식부기와 같은 분석적 엄격성이 부족함(The lack of analytic rigor that arises in double-entry systems)
- 회계기준과는 달리 지속가능성보고서 보고에는 잘 개발된 기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함(The relative lack of well-developed criteria)

21) 한중수 등(2021)도 “지속가능성 정보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과 함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정보를 어떻게 감사 또는 인증할 것인가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연구”임을 주장하였다.

방안을 제안한다.

〈표 4〉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주요 과제

주요 과제	내 용
(1) 인증인 관련	① 인증인(practitioner)의 정의 ② 인증인의 적격성 ③ 인증인의 독립성 ④ 인증인의 법적 책임
(2)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동일한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동시 수행 가능 여부
(3) 인증성격	감사(audit), 검토(review), 검증(verification), 평가(evaluation) 등
(4) 인증범위	인증범위의 제한 여부
(5) 인증기준	ISAE 3000 vs AA1000AS 등
(6) 인증보고서 양식	인증보고서 양식의 통일, 정형화된 보고서 양식 사용 등
(7) 인증보수	인증보수의 공개 등
(8) 인증 의무화 등	－인증의 자율 또는 의무 －지정제(직권 지정과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 표준감사 시간의 적용, 감리의 도입 등

1. 인증인 관련

가. 인증인의 정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ISAE 3000을 개정하면서 ‘Practitioner’의 정의를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들)(일반적으로 업무수행이사나 기타의 업무팀원,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법인)’로 개정하여 개업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도 ISAE 3000을 적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대신에 IAASB는 업무수행이사가 인증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품질관리 기준서 1”,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수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였다. IAASB는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나 품질관리와 같이 요구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증업무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개정 전 인증업무기준은 ‘Practitioner’를 ‘감사인’으로 번역하였으나, 개정된 인증업무기준에서는 ‘인증인’으로 번역하여 감사인과 구분하도록 하였다.²²⁾

22)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2.23.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개정개요와 전문-” 참조.

AA1000AS에서는 인증인(assurance practitioner)을 인증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개인(individual)으로 정의하고, 인증제공자(assurance provider)는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조직(independent organis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AA1000AS를 적용하는 경우에 ‘Practitioner’를 ‘검증인’ 또는 ‘검증팀’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일한 ‘Practitioner’에 대하여 ‘인증인’이라는 표현과 ‘검증인’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어서 혼란스럽다. 따라서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인증인의 용어를 통일하고, 인증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인증인의 적격성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누가 인증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회계법인으로부터 주로 인증을 받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회계법인이 아닌 기타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IFAC(2022)에 의하면 인증제공자(assurance provider)는 2019년에 회계법인과 계열사(audit or audit-affiliated firms)의 비중이 61%이고, 기타서비스제공자(other service provider)로부터 인증받은 기업은 39%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57개 기업 인증보고서의 인증인 중 5%(3개 보고서)가 회계법인이고, 95%(54개 보고서)가 기타서비스제공자(other service provider)로서 회계법인의 인증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매우 낮았다. 고정연(2022)에 의하는 경우에도 2021년 발행보고서를 기준으로 179건 중 회계법인으로부터 인증받은 건수는 7건(3%)에 불과하다.

현재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행과 인증 모두 자율이므로 인증인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인증이 의무화되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인증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인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므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인증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을 공인회계사(회계법인과 감사반)로 제한하는 것은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적격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형태(회계법인과 감사반)를 갖추었기 때문이다.²³⁾ 이와 동일한 논리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인도 적격성을 갖추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주체로 인증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증인의 자격을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현재의 인증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이 회계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 따라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정한 자격을 규율하는 방법과 일정한 자격을 검증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23) 외부감사법 제2조 제7호에서는 “감사인”을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감사인’과 ‘공인회계사’를 혼용하기로 한다.

다. 인증인의 독립성

인증인의 적격성과 함께 중요한 것이 인증인의 독립성 문제이다. 동일한 사람 또는 기관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과 인증업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독립성 위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일한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관련 용역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 독립성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²⁴⁾ 따라서 동일한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관련 용역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라. 인증인의 법적 책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는 감사인(회계법인과 감사반)이 재무제표의 대리작성,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않는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등록 취소, 업무정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의 대리 작성,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법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업무정지,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와 같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의 경우에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 회계법인이 소멸하거나 공인회계사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은 현재 자율이므로 인증인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이 의무화되면 인증인의 책임도 명시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인증인의 법적 책임이 회계감사와 유사해지면 아무나 감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의무화와 법적 책임, 인증의 적격성 등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의무화와 함께 인증인의 법적 책임 문제도 다루어져야 한다. 인증인의 법적 책임은 재무제표 감사인의 법적 책임을 참조하되, 낮은 수준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증의 법적 책임의 정립은 인증의 적격성과도 관련되며, 누가 인증을 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2.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앞서 알아본 것처럼 IFAC(2022)에 의하면 조사대상 505개의 보고서 중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이 ESG 인증을 함께 담당하는 비율은 71%이었으나 우리나라는 0%이다. 조사대상 22개국 중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이 ESG 인증을 함께 담당하는 비율이 0%인 국가는 3개국(한국, 사우디아

24) 이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에 한정되므로 회계법인과 감사반에 대한 문제이며, 기타인증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병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비아, 인도네시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회계법인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인증하는 사례가 미미하므로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인 ESG 인증을 함께 담당하는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이 활성화되고 의무화되려면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병행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는 인증인의 독립성 문제와도 관련된다. 만약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병행을 허용한다면 하나의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관련 용역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독립성 위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병행을 금지한다면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관련 용역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독립성 위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으므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병행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을 비재무보고의 시대에 재무제표 감사의 확장(natural extension of the statutory financial audit in the era of nonfinancial reporting)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유형의 비감사서비스(other nonaudit service)로 볼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Maso et al. 2020).

재무보고와 비재무보고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인증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통합보고와 인증이라는 점에서는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병행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Maso et al.(2020)와 Lu et al.(2022)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업에 대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과 재무제표 감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비감사서비스(nonaudit service)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업무는 성격이 다르므로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업무는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²⁵⁾ 따라서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병행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여 향후 있을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²⁶⁾

25) Maso et al.(2020)은 CSR 인증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비감사서비스(nonaudit services)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첫째, 다른 비감사서비스는 조세, IT, 일정 거래와 같은 특정 주제(specific matters)에 치중하는 반면에 CSR 보고서의 인증은 감사인에게 기업 차원의 CSR 지식(firm-wide CSR specific knowledge)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규제당국이 CSR 보고서에 대한 인증을 조만간 요구할 것이고, 프랑스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경우에는 이미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CSR 인증은 다른 비감사서비스와 다르다. 그 외에도 비감사서비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반면에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는 점에서도 다르고, 재무제표 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을 함께 수행하면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6) Teneo(2022)에 의하면 미국 SEC는 재무적 인증제공자(Providers of financial assurance)도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인증을 허용하고, 유럽의 CSRD에서는 재무적 인증제공자의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인증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IFAC(2022)에서도 외부감사와 ESG 인증 동시 제공 비율이 71%로 보고되고 있다.

3. 인증성격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의 ‘인증업무 개념체계’에서는 인증업무(assurance engagement)를 “준거기준에 따라 기초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한 결과에 대해 인증대상책임자가 아닌 의도된 이용자가 가지는 신뢰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설계된 결론을 표명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인증업무를 합리적 확신업무(reasonable assurance engagement)와 제한적 확신업무(limited assurance engagement)로 구분하고 있다. 합리적 확신업무의 대표적인 예가 감사(audit)고, 제한적 확신업무의 대표적인 예가 검토(review)다. AA1000AS에서도 ‘assurance’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증’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서 회계감사기준에서의 인증과 혼동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시되는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는 ‘검증’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²⁷⁾

인증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인증보고서에 대하여 “제3자 검증의견서”, “독립된 검증인의 검증보고서”, “기업시민보고서에 대한 독립된 인증보고서” 등 다양한 명칭의 보고서가 발행되고 있다. 반면에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는 공통의 보고서 명칭을 사용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700 문단 22와 문단 A20).

인증의 성격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므로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신뢰성의 수준이 각각 다르므로 엄격히 말하면 같은 수준의 신뢰성을 가진 지속가능성보고서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검토를 받은 경우와 감사를 받은 경우가 완전히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인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인증의 성격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증(assurance)’의 성격을 ‘감사(audit)’, ‘검토(review)’, ‘검증(verification)’, ‘평가(evaluation)’ 등에서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하고 통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증을 받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인증 수준에 따라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7) 인증의 성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ESG채권에서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ESG채권 외부검토의 성격을 검토(review) 또는 감사(audit), 검증(verification), 인증(certification), 평가등급 부여(rating) 등 중에서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에서는 외부검토(external review)의 유형을 4가지(① Second Party Opinion, ② Verification, ③ Certification, ④ Green, Social, Sustainability and Sustainability-Linked Bond Scoring/Rating)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에 환경부 등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데, 현재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른 외부검토 유형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와 유사하게 검토의견(second party opinion), 검증(verification), 인증(certification), 평가등급부여(green bond scoring/rating)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외부검토의 유형은 4가지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ESG채권에 대한 외부검토가 ESG채권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인증의 성격은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 위치(location of information)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FRS S1 ‘일반 요구사항’에서는 일반목적재무보고(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의 일부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업보고서로 보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때에는 강화된 성격의 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한국거래소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의 일부로 공시되는 경우에는 인증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고, 인증을 하더라도 약화된 성격의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²⁸⁾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 위치와 함께 인증의 성격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인증범위

지속가능성보고서 관련 인증은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인증과 온실가스 검증으로 나누어 진다.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에 대해서는 “제3자 검증의견서” 등의 보고서를 발행하고, 온실가스 검증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등을 발행한다.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인증보고서의 경우에 기업마다 인증의 범위가 다르다. 예를 들어 포스코(2021)²⁹⁾의 경우에는 ‘인증대상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페이지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금호타이어(2021)³⁰⁾의 경우에는 ‘검증범위’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명확히 구

28)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1년 1월에 기존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G) 외에 환경(E)과 사회(S)를 추가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공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9) 포스코(2021)의 인증보고서 사례

인증대상 정보

보고서에 포함된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7~109페이지에 수록한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Standards Index에 포함된 정보
- ESG FACT BOOK 98~104페이지에 수록한 ESG DATA
- ESG FACT BOOK 110~113페이지에 수록한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SASB) Index에 포함된 정보

30) 금호타이어(2021)의 인증보고서 사례

검증범위

보고서 검증에 적용된 검증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고서에 수록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보고내용, 일부 성과는 2022년 상반기 포함
- 지속가능경영 정책과 전략, 목표, 사업, 성과 등 보고서에 포함된 주요 주장, 중대성 평가 결과 중대 이슈에 포함된 사항
- 정보 수집, 분석 및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적합성 및 견고성

아래 사항은 검증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보고서 Appendix에 포함된 재무정보
- 보고서 Appendix에 포함된 GRI를 제외한 기타 국제 표준, 규범 및 이니셔티브 관련 Index 항목

분되지는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인증보고서를 통해 인증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기업마다 인증범위가 달라서 기업 간 비교가 어렵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해서도 직접배출량(Scope 1)과 간접배출량(Scope 2)만 검증한 기업도 있고, Scope 3까지 검증하는 기업이 있으며, 검증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기업도 있고, 포괄적으로 제시한 기업도 있는 등 다양하다.³¹⁾ 특히 Scope 3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Scope 1과 Scope 2만을 공시하고 인증을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Scope 3의 경우에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인증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범위와 관련된 혼란을 줄이고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인증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5. 인증기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증기준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제정한 ISAE 3000(ISAE 3000,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000)과 AccountAbility가 제정한 AA1000AS(Assurance Standard)이다.³²⁾ 고정연(2022)에 의하

• 보고서에 제시된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등 기타 연계된 부가정보

31)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범위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다르게 공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의견서”

검증범위

검증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운영상 통제 하에 있는 국내 모든 사업장 및 해외 24개 법인의 온실가스 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Scope 1 (직접) 및 Scope 2 (간접)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포스코 “『2021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대한 검증 의견서”

검증범위

주식회사 포스코의 운영통제하에 있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2) ISAE 3000은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or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으로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지속가능성보고서 등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적용 가이드라인(Non-Authoritative Guidance on Applying ISAE 3000(Revised) to Sustainability and Other Extended External Reporting(EER) Assurance Engagements)’을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22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지속가능성보고서 등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적용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을 위한 임시 기준의 성격이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일반(overarching) 인증기준으로서 ISSA 5000(International Standard on Sustainability Assurance (ISSA) 5000, General Requirements for Sustainability Assurance Engagements)을 제정할 예정이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ISSA 5000의 제정 계획을 발표하였고, 향후 공개초안 발표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에 제정될 예정이다.

면 우리나라에서 2021년에 회계법인인 ISAE 3000만을 사용하고, 회계법인 이외의 기관들은 AA1000AS만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회계법인 이외의 기관들은 ISAE 3000에서 요구하는 윤리(독립성) 요건과 품질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이고, 회계법인의 입장에서는 ISAE 3000이 AA1000AS보다 엄격한 기준이므로 굳이 AA1000AS를 추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IFAC(2022)에 의하면 조사대상기업 중 회계법인과 계열사는 94%가 ISAE 3000(개정)을 적용한 반면에 기타서비스제공자 중에는 39%만이 ISAE 3000(개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서 회계법인인 ISAE 3000(개정)을 적용하고, 기타서비스제공자는 ISAE 3000(개정) 이외의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일부 인증인의 경우에는 자체 인증기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³³⁾

ISAE 3000에서는 인증수준을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과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으로 분류한다. 반면에 AA1000AS에서는 검증유형(types)과 검증수준(levels)을 결정하여 검증을 수행한다. 검증유형은 유형1(type 1)과 유형2(type 2)로 나누어지고 검증수준은 중간수준 검증(moderate assurance)과 고위수준 검증(high assurance)으로 나뉘어진다.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시 적용되는 회계감사기준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제정하고 있고, 인증수준을 제한적 확신(예를 들어 검토)과 합리적 확신(예를 들어 감사)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제정하는 ISAE 3000에서도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수준을 제한적 확신과 합리적 확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AccountAbility가 제정한 AA1000AS에서는 검증유형(유형1과 유형2)과 검증수준(중간수준 검증과 고위수준 검증)으로 나누어 검증을 수행한다.³⁴⁾ 따라서 ISAE 3000을 적용한 기업과 AA1000AS 간의 인증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 일부 인증인의 경우에는 “ISAE 3000의 제한적 검증은 AA1000AS(2008)에서 정의된 검증의 중간수준(Moderate level)과 일치합니다.”라고 기술하는 경우도 있으나, 두 기준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인증인이 ISAE 3000이나 AA1000AS 이외의 자체 인증기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수준을 기업 간에 비교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³⁵⁾

33) 예를 들어, 한국경영인증원(KMR)은 자체 인증기준인 SRV1000을 적용하고,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에서는 자체 인증기준인 VeriSustainTM을 적용하기도 한다.

34) 검증유형(types)에서 유형1(type 1)은 AA1000AP(Principles) 기본원칙의 충족 정도를 검증하고, 고객사의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은 검증하지 않는 반면에 유형2(type 2)에서는 AA1000AP 기본원칙의 충족 정도를 포함하여 특정 성과정보에 대한 신뢰성까지 검증하고, 고객사와 검증기관이 협의를 통해 검증범위를 결정하며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적용하여 검증한다. 검증수준(levels)에서 중간수준 검증(moderate assurance)은 조직 내 자료를 수집 및 검증하고 분석자료 범위가 제한적이고 주로 내부 자료 위주로 검증하는 반면에 고위수준 검증(high assurance)은 조직 외부의 자료까지 포함하고 분석자료 범위가 넓으며, 수집한 내·외부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여 결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AA1000AS v3(2020)를 참조하기 바란다.

35) 예를 들어, 회계법인이 검증한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1)에는 “본 검증인은 ISAE3000에서

인증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 기업간 인증수준을 비교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증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회계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ISAE 3000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ISAE 3000으로 통일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ISAE 3000에서 요구하는 윤리(독립성) 요건과 품질관리 요건이 AA1000AS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므로 좀 더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ISAE 3000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³⁶⁾ 만약 ISAE 3000으로 통일하는 것이 어렵다면, 각 인증기준별로 인증수준을 명확히 하여 다른 인증기준을 적용한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6. 인증보고서 양식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의 경우에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증진시키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는 명칭으로 정형화된 양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경우는 통일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증인마다 제 각각의 보고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기업 간 비교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정형화된 인증보고서 양식 사용이 필요하다. 다만, 산업간 특성이 다양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이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양식만을 제정하고, 정해진 양식 외에는 인증인이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인증보수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보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of ‘ESG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 설문 조사’에 따르면 평균 인증비용(assurance costs)은 1,490만 원(29개 사 기준)³⁷⁾인 반면에, EC(2021)에 의하면 유럽연합 기업들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기술하고 있는 제한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기타서비스제공자가 검증한 하나금융그룹의 ESG 보고서(2021)에는 “Type 2 방법 및 Moderate 수준의 보증 형태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 36) 인증기준의 문제는 ESG채권에서도 존재한다. 외부검토품이 ESG채권에 대하여 외부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적정 수준의 외부검토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할 때 외부감사인이 준수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한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는 ESG채권 외부검토품이 없으므로, 시급히 제정하여야 한다. 이때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 사회책임,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성 관련 채권 외부검토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Green, Social, Sustainability and Sustainability-Linked Bonds External Reviews(June. 2022))」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37)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을 위해 체계 구축, 작성 대행 컨설팅 및 제3자 검증 명목으로 지출한 총비용은 평균 8,659만 원(32개 사 기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인증 비용은 1,490만 원(29개 사 기준)으로 집계

에 대한 평균 인증비용은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은 56,000유로(약 7,448만원)에서 75,000유로(약 9,975만원)이고, 합리적 확신 수준의 인증은 96,000유로(약 1억 2,768만원)에서 125,000유로(약 1억 6,625만원)로 추정되었다.³⁸⁾ Casey and Grenier(2015)에 의하면 미국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보수는 재무제표 감사보수의 5~10% 수준이라고 한다.

재무제표 감사에 비하면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보수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이 자율이고, 재무제표 감사에 비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범위가 좁고 난이도가 높지 않으며, 인증에 대한 법적 책임이 낮은 것 등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경험하였듯이 인증품질 경쟁이 아니라 저가수입으로 인한 가격경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보수의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매우 낮은 인증보수만을 받고 형식적인 인증만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인증 의무화 등

앞서 논의한 것처럼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하여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CSRD에서는 인증(certification)을 의무화하고,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과 scope 2)에 대해서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과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행과 인증이 모두 자율이지만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행이 의무화되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도 자연스럽게 의무화될 것이다.³⁹⁾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의무화는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적 흐름에 너무 뒤쳐질 수는 없으므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기업의 부담 완화와 준비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은 단계적 의무화가 바람직하다.

됐다. ... 연간 ESG 공시 컨설팅·인증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지출한 곳은 응답 기업의 50%(16곳)에 달했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컨설팅·인증 평균 비용이 9,299만 원에 달했다(서울경제신문. 2021.12.16.).

38) EC(2021)에 의하면 NFRD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한적 확신의 경우에 세부기준(detailed standards)을 보고하지 않은 기업은 56,000유로, 세부기준을 보고한 기업은 75,000유로로 추정되었고, 합리적 확신의 경우에 세부기준을 보고하지 않은 기업은 96,000유로, 세부기준을 보고한 기업은 125,000유로로 추정되었다. 원화 환산은 1유로당 1,330원을 가정하였다.

39) 이용우 의원 등은 2022년 6월 24일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이후 제출하는 사업보고서(2026년부터는 모든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부터 ESG 정보(“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를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도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과 관련해서도 지정제(직권 지정과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 표준감사시간의 적용, 감리의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인증 의무화가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이는 시간을 두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이 활성화된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결 론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간이 증가하고 있고, 2021년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기업 중 92%가 인증을 받아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비율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적절한 수준의 인증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발간이 기업 자율이므로 인증도 당연히 자율이고, 인증을 하는 인증인은 인증보수는 받지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는 달리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제대로 된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현황과 연구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주요 과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인 관련 과제와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병행 관련 과제, 인증성격, 인증범위, 인증기준, 인증보고서 양식, 인증보수, 인증의무화 등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인과 관련하여 인증인의 용어를 통일하고, 인증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으로 인증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동일한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관련 용역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의무화와 함께 인증인의 법적 책임 문제도 다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병행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여 향후 있을 수 있는 독립성 논란을 방지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인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인증의 성격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증’ 관련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인증을 받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인증 수준에 따라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범위와 관련된 혼란을 줄이고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인증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인증기준의 통일이 바람직하지만 통일하는 것이 어렵다면, 각 인증기준 별로 인증수준을 명확히 하여 다른 인증기준을 적용한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여섯째,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정형화된 인증보고서 양식 사용이 필요하며, 필수적인 양식만을 제정하고, 정해진 양식 외에는 인증인이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경험하였듯이 인증품질 경쟁이 아니라 저가수입으로 인한 가격경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보수를 공개하여 매우 낮은 인증보수만을 받고 형식적인 인증만을 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여덟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고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단계적 의무화가 바람직함을 제안하였다.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수백 년에 걸쳐 이론적 및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왔다. 반면에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인증은 10년~20년 정도로 역사가 짧다. 그러나 최근에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많은 관심은 빠른 시일 내에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항들 중 일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시장에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해결될 문제라도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 및 논의가 있어야 바람직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만간 의무화될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과 관련해서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관련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이루어져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보고서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증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비율은 높지만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기업이 많지 않으므로 충분한 통계분석을 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향후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면 관련 실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정연. 2022. “2021년 비재무 보고서 현황 및 시사점”. 월간 공인회계사 348호 : 25-28.
- 육근효. 2017. “CSR보고서 검증의 결정요인과 지배구조의 역할”. 경영학연구 제46권 제1호 : 157-183.
- 전영승. 2012.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제3자 검증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제26권 제3호 : 135-157.
- 최현수.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증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2.23.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 개정개요와 전문”.
- 환경부. 2022.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 한종수 · 강정윤 · 강소현. 2021.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회계실무 및 정책시사점 중심 문헌연구. 회계저널 제30권 제5호 : 263-336.
- AccountAbility. 2020. AA1000AS(Assurance Standard) v3.
- Ackers, B. 2017. The evolu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surance - a longitudinal study. *Social and Environmental Accountability Journal* 37(2) : 97-117.
- Ballou, B., P.-C. Chen, J. H. Grenier, and D. L. Heitger. 2018. CSR assurance and reporting quality : Evidence from restatement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7(2) : 167-88.
- Bell, T. B., M. Causholli, and W. R. Knechel. 2015. Audit firm tenure, non-audit services, and internal assessments of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53(3) : 461-509.
- Brown-Liburd, H., and V. L. Zamora. 2015. The rol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ssurance in investors' judgments when managerial pay is explicitly tied to CSR performance.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4(1) : 75-96.
- Casey R. and J. Grenier. 2015. Understanding and Contributing to the Enigma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ssurance in the United State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4(1) : 97-130.
- Clarkson, P., Y. Li, G. Richardson, and A. Tsang. 2019. Causes and consequences of voluntary assurance of CSR reports : International evidence involving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Inclusion and Firm Valuation.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32(8) : 2451-2474.
- Cohen, J. R. and R. Simnett. 2015. CSR and Assurance Services : A Research Agenda.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4(1) : 59-74.
- Cuadrado-Ballesteros, B., J. Martínez-Ferrero, and I. M. García-Sánchez. 2017. Mitigating

- information asymmetry through sustainability assurance : The role of accountants and levels of assurance.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6(6) : 1141–1156.
- European Commission. 202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3/34/Eu,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Regulation(EU) No 537/2014,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Burssels, 21.4.2021 SWD(2021) 150 final.
- Fernandez–Feijoo, B., S. Romero, and S. Ruiz. 2016. The assurance market of sustainability reports : What do accounting firms do?.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39 : 1128–1137.
- Fuhrmann, S., C. Ott, E. Looks, and T. W. Guenther. 2017. The contents of assurance statements for sustainability reports and information asymmetry.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47(4) : 369–400.
- Governance & Accountability Institute, Inc. 2021. Sustainability Reporting in Focus 2021.
- Hummel, K., C. Schlick, and M. Fifka. 2019. The role of sustainability performance and accounting assurors in sustainability assurance engagement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4(3) : 733–757.
- ICMA. 2022. Guidelines for Green, Social, Sustainability and Sustainability–Linked Bonds External Reviews.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2021. Benchmarking Global Practice : The State of Play in Sustainability Assurance.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2022. The State of Play in Reporting and Assurance of Sustainability Information : Update 2019–2020 Data & Analysis.
- Koh, K., S. Rajgopal, and S. Srinivasan. 2013. Non–audit services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 Evidence from 1978 to 1980.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8(1) : 1–33.
- Lu, M., R. Somnett, and S. Zhou, 2022. Using the same provider for financial statement audit and assurance of extended external reports : choices and consequence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forthcoming).
- Maso, L., G. Lobo, F. Mazzi, and L. Paugam, 2020. Implications of the joint provision of CSR assurance and financial audit for auditors’ assessment of going concern risk.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7(2) : 1248–1289.
- Michelon, G., D. Patten, and A. Romi. 2019. Creating legitimacy for 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ces : Evidence from sustainability restatements. *European Accounting Review* 28(2) : 395–422.
- O’Dwyer, B. and D. Owen. 2005. Assurance statement practice in environmental, social and

- sustainability reporting : a critical evaluation. *The British Accounting Review* 37 : 205 – 229.
- Perego, P. 2009.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oosing different assurance providers : An international stud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26(3) : 412 – 425.
- Peters, G. F. and A. M. Romi. 2015. The association between sustainability governance characteristics and the assurance of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4(1) : 163 – 198.
- Pflugrath, G., P. Roebuck, and R. Simnett. 2011. Impact of assurance and assurer’s professional affiliation on financial analysts’ assessment of credibilit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0(3) : 239 – 54.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22. Fact Sheet,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 Simnett, R., A. Vanstraelen, and W. Chua. 2009. Assurance on Sustainability Reports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Accounting Review* 84(3) : 937 – 967.
- Steinmeier, M., and M. Stich. 2019. Does sustainability assurance improve managerial investment decisions? *European Accounting Review* 28(1) : 177 – 209.
- Svanström, T. 2013. Non-audit services and audit quality : Evidence from private firms. *European Accounting Review* 22(2) : 337 – 66.
- Teneo, 2022. 3. Different Strokes to Move the World? : How the SEC’s Proposed Climate Disclosure Rule Impacts the ESG Disclosure Landscape.
- Velte, P. and M. Stawinoga. 2017. Empirical research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surance (CSRA) :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87 : 1017 – 1066.
- Wong, R., and A. Millington. 2014. Corporate social disclosures : a user perspective on assurance.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27(5) : 863 – 887.

The Main Issues and Improvements Related to Sustainability Report Assurance

Kyu An Jeon^{*} · Joong Hyun Lee^{**} · Kyung Ro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research trend of sustainability report assurance,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to present major issues related to sustainability report assurance, and to propose a method for introducing a assurance system for sustainability reports in Korea.

The proposals related to sustainability report assurance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terminology of the assurors, clarify the definition of the assurors, and limit the assurors to legal entities with certain qualifica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the same accounting firm can provide services related to auditing financial statements and preparation of a sustainability report at the same time, and the legal responsibility of a sustainability report assurors should be clarified. Second, it should be clarified whether external audit and sustainability report assurance can be concurrently performed. Third, the nature of assurance should be defined, and terms related to ‘assurance’ should be unified, and the reliability of the sustainability report should be evalua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assurance. Fourth, in order to reduce confusion related to the scope of sustainability report assurance and to enhance comparability among companies, the scope of assurance of the sustainability report should be clearly defined. Fifth, the level of assurance for each assurance standard should be clarified to enhance comparability between companies that have applied different assurance standards. Sixth,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use of a standardized assurance report format, and to enact only the essential format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es vary. Seventh, the assurance fee should be disclosed to prevent price competition due to the low price. Eighth, it is desirable to make the assurance of the sustainability report compulsory in stages by considering the burden on companies and reflecting international trend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major issues related to sustainability report assurance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in a situation where interest in the mandatory publication of sustainability reports is rapid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als in this study will be discussed as soon as possible,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ility report assurance.

〈Key words〉 sustainability report, assurance, practitioner, verific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kajeon@ssu.ac.kr, First Author and Corresponding Author

** Ph. D. Student,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95sunbi@daum.net, Co-author

*** Ph. D. Student,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krlee@bnhacs.com, Co-author